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61
----------	-----

2024. 9. 11.(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유상용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4년 8월 22일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6일

라. 상정일자: 2024년 9월 4일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유상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 수사 조력, 소송대리, 고소

고발 조력을 위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직무관련사건 지원 및 지원신청 등, 지원 결정, 지원금액, 지원 비용 회수 (안 제3조~제7조)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
- 소송결과 제출,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위임규정 (안 제9조~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최근 악성 민원 및 교권 침해 증가,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등으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사나 소송이 진행된 경우 공무원은 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상황임
-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에 가입하여 기간제를 포함한 교원, 교육전문직원,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담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피해 보상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지방공무원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이 관련된 수사, 민·형사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음

- 17개 광역시·도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한 곳을 총 3곳이고, 규칙을 포함하여 9개 교육청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음

<타시도 교육청 직무관련 사건 조례>

연번	시·도	조 례 명	제·개정일
1	대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2022. 5. 10. (제정)
2	충남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2023. 2. 28. (제정)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	2023. 11. 9. (제정)

<타시도 교육청 직무관련 사건 규정>

연번	시·도	규정	지원 한도			
			민사	형사	고소·고발	회수규정
1	서울	규칙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0
2	인천	시행규칙	500만원	500만원	규정없음	0
3	대구	조례	500만원	500만원	규정없음	0
4	광주	규칙	500만원	500만원	규정없음	0
5	부산	규칙	500만원	500만원	규정없음	0
6	경기	규칙	소가별 상이 (최대480만원)	X	규정없음	0
7	충남	조례	1,000만원	1,000만원	규정없음	0
8	경남	규칙	소가별 상이 (최대500만원)	500만원	규정없음	0
		조례	500만원	700만원	규정없음	0
9	제주	규칙	소가별 상이 (최대600만원)	400만원	400만원	0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직원 등 까지 확대해 도내 교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 고소·고발하는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제정 목적, 지원 대상과 지원 사항,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심의위원회 선정 및 기능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공무원 등’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기존 ‘교원보호공제’ 및 ‘책임보험’ 제도로 지원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을 넘어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하는 등 도내 공·사립 유치원 및 학교 교직원들 대상으로 폭넓은 지원 혜택을 제공함

<최근 5년간 ‘교원보호공제’로 지원된 충청북도교육청 소송비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상	1. 교원 (기간제 포함, 휴직자 제외)	1. 교원 (기간제 포함, 휴직자 제외) 2. 교육전문직원	1. 교원 (기간제 포함, 휴직자 제외) 2. 교육전문직원	1. 교원 (기간제 포함, 휴직자 제외) 2. 교육전문직원 3. 강사	1. 교원 (기간제 포함, 휴직자 제외) 2. 교육전문직원 3. 강사 (시간제 전일제 산학겸임교사)	1. 교원 (기간제 포함, 휴직자 제외) 2. 교육전문직원 3. 강사 (시간제 전일제 산학겸임교사)
대상인원(명)	15,265	15,843	16,178	16,573	16,844	16,509
보장내용 및 한도	-사고당 2억원 -연간 총10억원	-사고당 2억원 -연간 총10억원	-배상 사고별 최고 2억원	-배상 사고별 최고 2억원	-배상 사고별 최고 2억원	-배상 사고별 최고 2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형사방어비용 최고 5천만원 -연간 총10억원	-형사방어비용 최고 5천만원 -연간 총10억원	-형사방어비용 최고 5천만원 -연간 총10억원	-민형사 소송비 사고당 심급별 660만원 -분쟁조정 법률 자문 330만원 -심리상담 조언 비용 150만원
인원			3	2	8	8
보험지급 금액(천원)			24,750	15,432	45,100	23,600

- 안 제4조에서는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교원보호공제’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제도를 우선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 및 업무 처리의 혼선을 예방함
- 안 제5조에서는 당사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 공무원 등이 교육감이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소송하거나 고소·고발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책임보험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거나 지원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
- 안 제6조는 소송비용 지원 범위와 상한액을 정하였으며, 상한액은 교원의 ‘교육보호공제’, 지방공무원의 ‘책임보험’보다 높게 설정하여 공무원들의 신탁 폭이 넓어진 것임

<각 제도별 소송비원 지원 한도>

보상한도	교원보호공제	공무원책임보험	조례
민사사건	심급별 660만원	건당 3,000만원 한도	심급별 1,000만원
형사사건	심급별 660만원	1심 1,000만원 2심·3심 각 500만원	심급별 1,000만원
참고	변호인보수 최대 330만원	기소 전 방어 비용 1,000만원	수사단계 1,000만원

- 안 제7조(지원비용 회수)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전부 패소한 경우, 형사소송의 경우 유죄로 확정된 경우, 직무 관련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된 사람이 없을 경우 등 귀책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함. 또한, 타인의 오·작동 등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렵거나 직무의 곤란성 등의 참작 사유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담당자 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 및 책임을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이고 직무수행의 한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2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신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안 제10조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 해당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원 및 회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지원 및 비용 회수 조치가 가능하게 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일 기준 진행 중인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규정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제 또는 보험을 통해 교원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던 것을 도내 공·사립 유치

원 및 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하여 직종과 무관하게 일률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
- 다만, 제4조에서는 다른 공제제도에서 우선 신청하여 소송비용 지원을 받도록 규정한바, 조례와 공제제도의 상한액 차이에 따른 금액은 조례를 근거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임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 그 직무와 관련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사건”이란 충청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또는 각급학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고 한다.)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당하거나 직접 고소·고발을 하는 사건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 나.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 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 마.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 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및 강사
 - 사.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에서 임용한 사무직원

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호의
교육공무직원

제3조(직무관련사건 지원) 교육감은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교육감에게 수사 조력, 소송대리, 고소·고발의 조력을 위한 소송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사건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이 기명·날인한 약속서(별지 제2호서식)
3.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4. 직무관련사건의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등 소
송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서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교원배상
책임보험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제도를 우선 신청하여
야 한다.

제5조(지원결정) ① 교육감은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
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직무관련사건의 소송 결과에 따른 교육
감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승소 가능성, 고소·고발 대상자의 기소 가
능성 여부, 기타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직무관련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사자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공무원 등이 교육감 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금액)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원 금액은 착수금·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합산한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원비용 회수) ①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전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 등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단, 기소의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한 경우: 고소·고발로 인하여 기소된 사람이 없는 경우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건이 타인의 오·작동 등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직무의 곤란성 등의 참작 사유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교원 및 공무원 등의 직무활동이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3. 소송비용 회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직무관련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때마다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당시 진행중인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표 1]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상 한 금 액
1. 민사사건	심급별 각 1,000만 원
2. 형사사건	수사단계 1,000만 원 심급별 각 1,000만 원
3. 직무 관련 고소·고발한 사건	수사단계 1,000만 원

※ 비고

1. 직무관련사건의 지원금액은 변호사 보수와 그 밖의 소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사 수임료 지원(요청 금액 :)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판결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등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변호사 수임료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청 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확약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직위(급), 생년월일 기재)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의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의 소송비용 지원에 동의하며,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제7조(지원비용 회수)에 해당될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일체를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원한 소송비용의 회수를 위해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사전 조치, 본안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자치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3. 23.>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 3. 23.>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2011. 7. 25.>

□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립학교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0.>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

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20. 12. 22.]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9. 12. 10.>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

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15. 3. 27.] [충청북도조례 제3770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3.27.>

1. “교육공무직원”이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3. 12. 29.] [충청북도교육규칙 제87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19조의2(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12. 29.>

② 소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6. 12., 2022. 4. 22.>

1. 중요소송 사건의 지정 및 해제
2.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사례금의 결정 및 변경
3. 공익소송 등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사건의 지정
4.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6. 8.]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이 직무 관련 민사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직무관련사건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소송비 지원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 지원 조례안 제3조(직무관련사건 지원) 및 제6조(지원금액)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 산출내역의 단가는 1인당 1,000만원, 연당 6명으로 추계함

나. 추계 결과: 금300,000천원

- 조례안 시행 시 추가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예산

5. 추계 비용의 상세내역

-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 지원 조례안 제6조(지원금액)
- 소송비용
 - 10,000,000원×6명×5년 = 300,000,000원
 - ※ 소송비용 지원금액은 연도별 동일하게 운영하되, 향후 수요 감안하여 확대 여부 재검토